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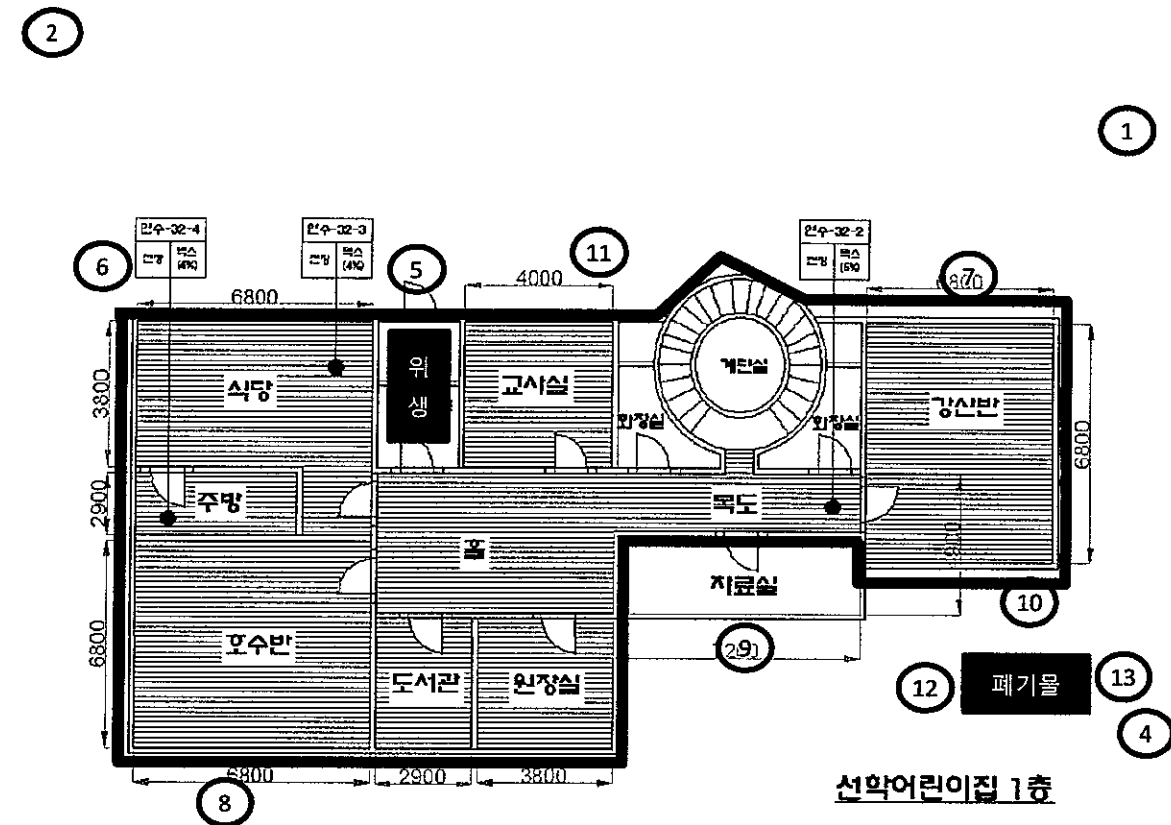
1. 측정자 (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김 성 렬	대기환경기사	16204050741E	측정자
이 지 은	화학관련학과 졸업		분석자

2. 측정결과

측정일시	05월 11일			
	시료번호	측정 지점	측정농도(개/㎤)	초과여부
측정결과	1	부지경계선	0.002	미만
	2	부지경계선	0.002	미만
	3	부지경계선	0.002	미만
	4	부지경계선	0.002	미만
	5	위생설비 입구	0.002	미만
	6	음압기 배출구	0.002	미만
	7	음압기 배출구	0.002	미만
	8	음압기 배출구	0.002	미만
	9	음압기 배출구	0.004	미만
	10	음압기 배출구	0.004	미만
	11	폐기물 반출구	0.003	미만
	12	폐기물 보관지점	0.002	미만
	13	폐기물 보관지점	0.002	미만

측정 지점 위치(도식도)



선택어린이집 1층

위생설비시설

폐기물

작업 구역

○
측정 위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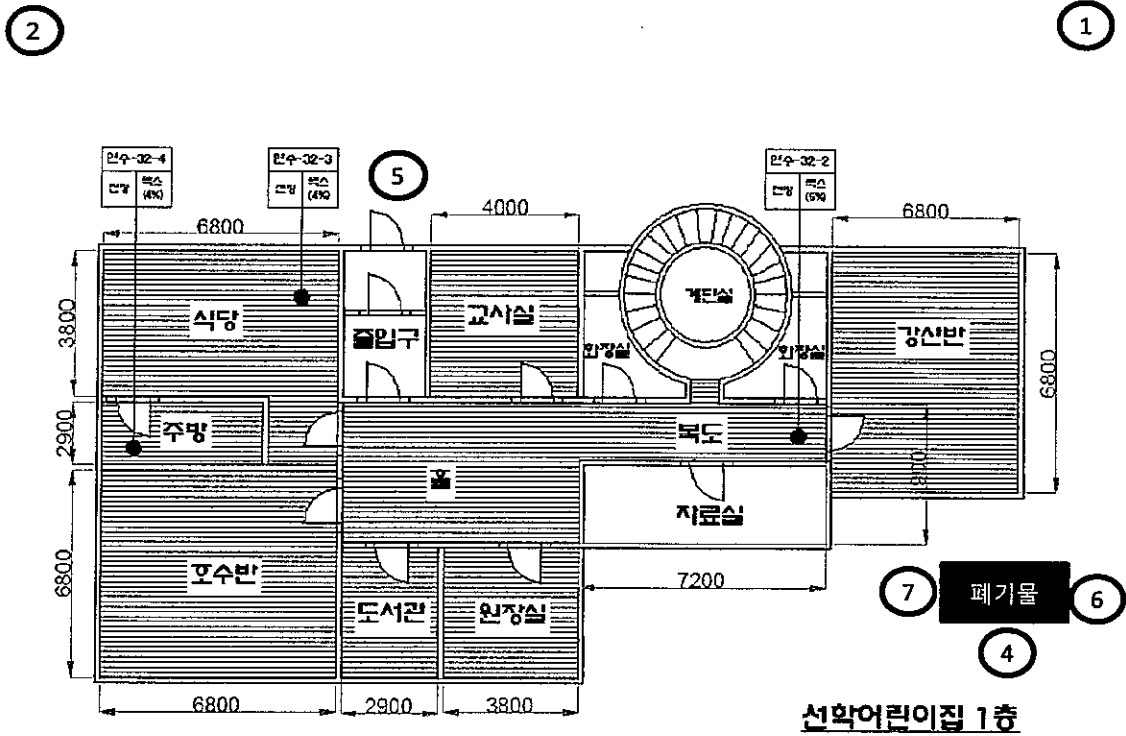
1. 측정자 (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김 성 렬	대기환경기사	16204050741E	측정자
이 지 은	화학관련학과 졸업		분석자

2. 측정결과

[illegible]

측정 지점 위치(도식도)



첨부 서식 3 지정서

제2014-120005호

석면조사기관 지정서(변경)

기관명 (주)엔플러스이
소재지 (472-843) 경기도 남양주시 파도읍 마석우리 258-10
대표자성명 윤이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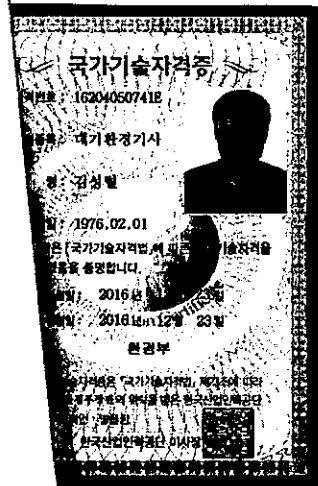
중대행(지정)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한계
단합지역
내행(지정) 사업장(0)개소, 근로자(0)명
한계
대행(지정) 전국
지역

- * 준수사항
1.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고용노동지방법관서의 자료제공요구 및
질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석면조사기관은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격의 의하여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2014. 6.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Tel : 1661-5451 Fax : 0303-3440-5451

email : npluse1@npluse.co.kr

N + E

(주) 엔플러스이

Nature and the Environment